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47 (2022. 1. 31 ~ 2. 4)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건설/부동산 중대재해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위반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ESG 에너지인프라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 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기업	③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 중 분쟁성 민원을 제외한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
공포 법령	기업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도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심의, 5개년 단위 전략사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세액 공제 지원 등.
입법/ 행정예고	ESG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등 음료를 담아가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 부과.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Y1L0T6G2M5V0B9P4I0E3H8W9U7A1		22.01.26.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1F1R2P3L0V1F5I2M6Y3F1M8M3S2		**22.01.24.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보험 관련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 · 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 · 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 · 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 · 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 · 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 ·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 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Q1U0C3P2G3K1G3N5N3X0I9B8W6R6	경향신문 22.02.02. '단순 보험민원 협회 이관' 법률 개정안 처리, 대선 이후로 밀리나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2021430001	21.04.09. 제안 21.06.22. 상임위 상정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 ·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도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있음. 국내에서도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서울신문 22.02.03. “반도체 특별법, 월드컵서 손흥민 빼라는 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03020014	22.02.03. 제정 22.08.04.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해당 기술이 국가 ·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 변경 ·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11조). 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 ·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 · 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차.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이 시험 · 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및 제34조). 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파. 기업 ·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연대협력모델을 발굴 · 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18813,20220203)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안 제10조) -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나.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안 제18조) -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다.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1) -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라.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안 별표6) -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128?opYn=Y&lsNm=%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isOgYn=Y&edYdFmt=2022.+2.+3.&stYdFmt=2021.+8.+1.	매일경제 22.01.24. 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 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70276/	22.01.25. ~ 22.03.07.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국민일보][사설]삼표산업 매몰사고, 중대재해법 엄격 적용 계기 돼야(2022.02.0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9752&code=11171111&cp=nv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삼표산업 골재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함. 국내 건설용 골재 1위 업체인 삼표산업은 ㈜삼표 대표와 그룹 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진행하며,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적용받는 요건이 있는데 3명이 숨졌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삼표산업은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임. CEO가 처벌받을지와 직결된 세 번째 요소는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인데,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음. 법에 따라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원리원칙대로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

[한겨레][사설]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 중대재해법 철저히 적용해야(2022.02.02)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9488.html

주요내용 29일 레미콘 제조 기업인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도중 토사 30만 세제곱미터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천공기·굴착기 운전원 3명이 매몰돼 숨졌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은 조사하였으며,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 지난해 6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는 떨어진 바위에 맞아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한명이 사망하는 등 두차례나 사망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근래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회사는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어야함.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선례가 될 이번 사건에서 빈틈없는 조사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함.

[한국일보][사설]중대재해법 시행…'산재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로(2022.01.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614050002100?did=NA

주요내용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음.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산업재해는 다단계 구조 말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책임은 하급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결돼 왔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엄벌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책임지고 작업장 안전 개선에 나서라는 것임. 이 법은 무차별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법원 역시 엄밀히 인과관계를 따져 처벌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 방식을 과학화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버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세계일보][사설]중대재해처벌법 혼란,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보완해야(2022.01.26)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5515984?OutUrl=naver

주요내용 법 제정의 계기가 된 2018년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부터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막아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법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함.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이어서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대기업들은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컨설팅이나 노무·법률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임. 중대재해 사건의 1차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 등 당국은 처벌에 초점을 두는 듯함.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데, 관행적으로 엄벌만 강조하고 예방에 소홀해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음. 정부와 국회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기업법무그룹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